



연 수 구



수신 관내 노인요양시설

(경유)

제목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계획 알림('21.6.1.시행)

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상-2451(2021.5.26.)호 및 시 노인정책과-9761(2021.5.2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종사자 선제검사,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, 6월 1일부터 입소자·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도록 방침('21.5.21.중대본)을 발표 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,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계획('21.6.1.시행)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, 각 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계획 1부.

2. 복지부-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 안내(21.6.1.시행) 1부. 끝.

연 수 구 청 장

주무관

김남호

노인시설담당

정경미

노인장애인과의 전결 2021. 6. 1.

과장

하인순

협조자

시행 노인장애인과의-26877

접수

우 219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8, (연수동)

/ <http://www.yeonsu.go.kr>

전화번호 032-749-7724

팩스번호 032-749-7689

/ nh021@korea.kr

/ 부분공개(5)

살기 좋은 연수! 행복이 넘실대는 연수!

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계획

- 코로나19 중수본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허용 방침 등을 고려하여 **접촉 면회 시행**

* 예방접종 미실시자 경우는 비접촉면회('21.3.2.), 임종시기 등의 접촉면회 기 시행('21.3.9.) 유지

□ 노인요양시설 접촉 면회 시행: '21. 6. 1.(화) ~

【노인요양시설 현황】

('21. 5월)

구분	계	중구	동구	미추홀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	옹진
시설수	437개소	22	9	45	32	100	63	55	76	32	3
입소자	13,052명	744	300	1,689	888	2,520	1,918	1,521	2,298	1,105	69
종사자	9,168명	491	218	1,192	582	1,824	1,349	1,074	1,648	737	53

□ 추진개요

- **(대상기준) 면회객, 입소자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**

(2차 접종 후 2주경과)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

- 면회객 · 입소자가 예방 미접종 경우는 접촉면회 불가

* (예외적 허용) 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

** KF94(또는 N95) 마스크 +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커버(또는 장화) 등 착용

*** PCR 검사 음성확인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

- **(사전준비)**

- 시설 내 1인실 또는 독립된 면회 공간 마련
- 보호자에게 사전면회 예약 절차 및 면회수칙 안내
- 면회객 방문 명부 비치·관리
- 방역 용품 준비(마스크, 손소독제, 발열체크기 등)
- 시설책임자는 면회객 접종확인(종이증명서 또는 QR코드 등)

- **(면회수칙)**

-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
- **면회는 1일 4회(오전, 오후 각 2개팀, 1팀당 3명 이하) 실시**
- * 팀별 면회 간격은 자체방역 준비를 위해 1시간이상 유지
- * 향후 접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면회 횟수 · 인원 등 확대 예정

- 면회 후 장소는 반드시 소독·환기 방역 준수
- 음식물 음료 등 섭취 불가
-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장소 이외 시설 출입 금지
- 면회객 접촉 직원은 반드시 2차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
- 면회객 중 예방 미접종자는 반드시 PCR검사 음성확인서(24시간 이내)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
- 면회시 면회객·입소자는 마스크 착용(KF94, N95), 손 소독 실시

○ (사후관리)

- 건물내 공용 엘리베이터 주기적 소독
- 면회신청서(1인당 1부) 내역 관리 철저
- 면회장소 1일 2회 이상 소독·환기, 면회 후 입소자 및 면회객 발열체크, 상시 모니터링으로 문제발생시 면회 중단 조치 등

□ 군·구 협조사항

- 시설 일일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·감독 철저
- 시설이용자·종사자 및 면회객 중 감염자 발생 시, 면회 중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

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면회기준 개선 안내

□ 추진 배경

- 종사자 선제검사,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

□ 접촉면회 시행 기준

- (대상기준) 입소자,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*
(2차 접종 후 2주경과)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
- * (미완료자)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,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
- (접촉면회 수칙)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, 시설 1차 접종률(75%이상)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

<공통 방역수칙 >

- (면회장소)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
- (기본수칙) 사전예약, 입소자·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, 면회객 명부 관리, 음식·음료섭취는 불가,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(*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)
- (입소자) 마스크 착용(KF94, N95), 손소독 실시

- ① (면회객 접종완료)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(사례1, 사례2)
- ② (입소자만 접종완료) 1차 접종률 75%이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/ 75%미만 시설은 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PCR 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(사례3)
- (접종확인)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(전자 증명서포함)를 통해 확인

▣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

	유형	입소자	면회객	접촉면회	면회객 방역수칙	비고
접종완료 여부	사례1	○	○	허용	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	전체시설
	사례2	X	○			
	사례3	○	X	허용	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	접종률 75%이상시설
					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***	접종률 75%미만시설
	사례4	X	X	불가 *(예외적허용)	보호용구** PCR 등 음성 확인***	3.9 기 시행 전체시설

* (예외적 허용) 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

** KF94(또는 N95) 마스크 +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커버(또는 장화) 등

*** PCR 검사 음성확인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

□ 면회기준 신·구 비교표

구분	기존 면회기준(3.9 시행)	개선안(6.1 시행)
접촉면회	예외적 허용 * 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	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* 입원환자·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,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
비접촉면회	허용 *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전제	기존과 동일

□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

○ (향후계획) '21. 6. 1부터 시행

※ 2차 예방접종 집중 시행을 위해 접종 시작(5.14) 후 2주기간 고려

○ (지자체 협조사항) 시설별 자체 면회계획 수립, 면회공간 확보,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*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 지원 등

* 최근 백신 미접종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감염사례 다수 확인

- 면회 후 장소는 반드시 소독·환기 방역 준수
- 음식물 음료 등 섭취 불가
-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장소 이외 시설 출입 금지
- 면회객 접촉 직원은 반드시 2차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
- 면회객 중 예방 미접종자는 반드시 PCR검사 음성확인서(24시간 이내)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
- 면회시 면회객·입소자는 마스크 착용(KF94, N95), 손 소독 실시

○ (사후관리)

- 건물내 공용 엘리베이터 주기적 소독
- 면회신청서(1인당 1부) 내역 관리 철저
- 면회장소 1일 2회 이상 소독·환기, 면회 후 입소자 및 면회객 발열체크, 상시 모니터링으로 문제발생시 면회 중단 조치 등

□ 군·구 협조사항

- 시설 일일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·감독 철저
- 시설이용자·종사자 및 면회객 중 감염자 발생 시, 면회 중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